

3) 공영사업 또는 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업법상 직영기업(예: 상수도, 지하철등)에 설치된 기계시설 등이거나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가치가 상당히 커야 하며, 기업회계 방식의 고정자산으로서 관리되어야 할 기관차·전차·객차·화차·기동차 등 궤도차량 등이 이에 해당된다.

사 례 : 용도폐지된 기계기구의 물품으로의 전환은(재무부 국재 1281-1777, '82. 5. 24 질의 회신)

○ 행정재산인 기계기구를 용도폐지하였다고 해서 바로 물품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국유잡종재산으로 전환되는 것임. 다만, 용폐된 기계기구를 폐기·해체 또는 철거하는 과정에서 생긴 폐기물·해체물 또는 철거물이 물품으로 신규 취득되는 것임.

4)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지상권”이란 공작물 또는 죽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다(민법 제279조). 지상권은 토지의 사용권을 말하므로 지상권자는 점유권에 의한 점유보호청구권을 갖는다.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특정하여登記하여야 하고 그 범위는 토지의 상하에 미칠 수도 있다.

“지역권”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자

기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지역의 편익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291조).

“광업권”이란 등록된 광구 내에서 광물을 채굴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광업법 제5조 및 제12조).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라 함은 ‘어업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5) 저작권,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기초를 둔 권리로써 문서, 기타 표현방식이나 형식의 여하를 막론하고 학문 또는 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일체의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가 가지는 권리이다.

“특허권”이란 특허법에 기초를 둔 권리로써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신규의 발명을 한 자가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얻어 특허권으로써 설정등록을 한 것을 말하고, 발명품을 제작사용, 판매 또는 확보할 권리를 독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상표권”이란 상표권법에 기초를 둔 권리로써 타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의장권”이란, 의장법에 기초를 둔 권리로써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의장의 등록권리이다.

“실용신안권”이란 실용신안법에 기초를 둔 권리로써 물건의 형태, 구조 또는 물건